

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. 10. 남은기 위원장의 3인

나. 회 부 일 자 : 2003. 10. 10

다. 상 정 일 자 : 2003. 10. 10

(제117회 화순군 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·건설위원회 제1차회의)

2. 제안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박광재 의원

나. 제안사유

○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대출금리를 조정하고 WTO로 인하여 열악해져가는 농어민의 부담을 경감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○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2%로 하고, 연체이자율은 연10%로 준한다
(안 제7조제2항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임근성)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화순군 농어업인의 육성과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화순군 농림수산 진흥기금의 융자금 대출 금리를 현행 3%에서 2%로 인하하고 연체이자율을 도농어촌진흥기금 연체이자율인 12%에서 10%로 인화된 내용으로, 우리군 관내 농어민들의 복리 증진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.

4. 질의 답변 요지

"생략"

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가결”

7. 첨 부 :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

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융자금)②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2%로 하고 연체이자율은 연10%로 준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
<p>제7조(융자금)① -생략-</p> <p>②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4%로 하고, 연체이자율은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액에 따른 연체이율을 적용한다.</p>	<p>제7조(융자금)① -현행과 같음-</p> <p>②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2%로 하고, 연체이자율은 연10%로 준한다.</p>

